

SAg.c. 6

인권위원회 설치 관련 박주선 청와대법무비서관 방미관련 자료

1. 인권위원회 설치 관련 방미계획, '99.1. 법무
2. 박주선 씨 활동에 관한 정부공개청구서,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99.2.19
3.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 통지문

人權委員會 設置 關聯 訪美計劃

'99. 1. 法務

1. 訪問者

-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박주선
- 법무부 인권과 검사 권성동, 국제법무과 검사 이중재(통역)

2. 訪問對象者

- UN인권고등판무관실 뉴욕사무소장 : Mr. Bacre Waly Ndiaye
- 국제인권연맹 회장(President, International League for Human Rights) : Mr. Scott Horton
- 콜롬비아대학교 인권법 연구소장 : Louis Henken

3. 訪問目的

-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치계획 등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및 인권신장의지 홍보
- 미전향 장기수등 공안사범 처리, 국가보안법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설명
- 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국제인권기관의 견해 청취
- 각국의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료 수집

4. 訪問日時

'99. 1. 27~1. 31

5. 參考事項

방문목적을 고려하여 대사관에서 방문대상자를 추가선정 또는 교체할 가능성 있음

人權委員會 設立 關聯
國際人權機關 訪問結果 報告

'99. 2. 1



報告者 : 法務秘書官 朴 柱 宣

1. 訪問期間 및 目的

o 기 간

'99. 1. 27 ~ 1. 31

o 목 적

-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 설립 관련 국제인권기관 견해 청취 및 자료수집
- 「국민의 정부」의 인권정책 설명

2. 우리側 說明 內容

가. 김대중 대통령님의 인권철학과 의지

- o 대통령님의 인권철학과 국내 인권정책
- o 대통령님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활동 및 업적
- o 대통령님의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나. 인권위 설립 관련 사항

- o 인권법 제정취지, 인권위의 업무·기능·구성·예산 등
- o 특히, 인권위의 설립형태에 관한 정부안(독립적 특수법인) 및 일부 인권단체의 안(정부기구)

다. 「국민의 정부」의 인권정책

- o 사상전향제 폐지와 준법서약제 도입
 - 준법서약제의 불가피성과 '양심의 자유' 부합
- o 장기 좌익수 석방 문제
 -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도적 차원에서 석방 예정

3. 國際人權機關의 見解

가. 국제인권연맹

□ 면담자

- Scott Horton(회장, 변호사)
- Harold Tylor(전 미국법무부 인권차관보, 전 연방법원 판사)
- Edward Kline(인권문제 전문가)

□ 면담내용

○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일반적 평가

- 대통령님과 신정부의 인권신장 노력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실로서, 대통령님의 인권상 시상은 이를 반영한 결과임
- 대통령님의 국제인권연맹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

○ 인권위 설립 관련 사항

- 기본방향
 - 한국의 인권위 설립방향이 바람직하고, 특히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 인권위가 법원, 검찰 기타 법집행기관의 기능을 대체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모든 기구가 각자의 기능을 다할 때 인권보장이 실현될 것임
 - 인권위가 모든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함

- 설립형태

- 인권위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특수법인)로 설치하여야 함
 - 정부기구로 할 경우 인권위가 아무리 일을 잘하여도 국민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공무원 신분으로는 임명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익보다 손해가 많음
 - 국가적으로 명망있는 인사가 국가기구의 인권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 희박하므로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함이 바람직
 - 미국은 독립된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법무성내에 인권국만 설치되어 있어 제도상 독립성이 문제될 수가 있지만 시민권리위원회등 다수 민간단체와 협조관계가 이루어져 독립성에 대한 현실적 시비는 제기되지 않고 있음
- ※ 국가기관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의 인권위도 정부의 간섭으로 실패하였음을 지적

- 인권위원 임명과 자격

-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인권활동을 한 자중 국민적 합의가 있는 자로 임명하여야 하고, 임명절차는 공개되고 투명하여야 함
- 정치적 인물은 배제함이 바람직함
- 인권위원의 보수, 임기, 예우는 대법원 판사나 헌법재판소의 판사에 준하는 것이 독립성 보장에 유리

- 인권침해의 구제

- 인권위가 정부에 일정 기간내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는 권리 보유 필요
- 군과 교정기관의 인권침해행위를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
- 인권위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도록 한 한국의 인권 법안에 대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

나. UN 인권고등판무관실 뉴욕사무소

□ 면담자

- o Elissavet Stamatopoulou(소장대리)

□ 면담내용

o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일반적 평가



- 대통령님의 취임 이후 한국의 인권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어 고무적임
 - 특히, '98년 UN 총회에서 미얀마에 대한 인권개선 결의안에 한국이 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게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감사함
- ※ 장기 좌익수 석방은 전향적인 조치로 'UN 불법구금위, 양심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이 사실을 홍보한다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고양에 유리할 것임

○ 인권위 설립 관련 사항

- 기본방향

- 인권위는 UN권고안에 부합되게 설치되어야 함
- 한국의 인권위 설립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만한 훌륭한 모델이 될 것임

- 설립형태

- 인권위는 가능한 한 정부로부터 최대한 격리되는 것이 좋으므로 특수법인이 정부기구보다 적절
- 정부기구는 정부내의 다른 부처의 압력과 간섭으로 독립성 유지에 문제있고, 정치화 될 가능성이 상존
- 브라질과 그리스의 인권위 모두 국가기구이나 독립성 훼손이 크게 문제된 바 있음

- 인권위원 임명과 자격

- 인권위원은 양심적이고 명망있는 자 중에서 임명 하되,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

다. 콜럼비아 대학교

□ 면담자

○ Louis Henken(인권법 연구소장, 종신교수,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인권문제 전문가)

※ 한국정전협정 문안작성자

○ 노종호(법대 교수, 한국법 연구소장)

○ 콜럼비아법대 학장 등 다수 법률교수

□ 면담내용

○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일반적 평가

- 대통령님은 good president이므로 한국의 인권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인권위 설립 관련 사항

- 기본방향

-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감시할 인권기구로 인권위가 가장 적합

- 설립형태

-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 찬성. 다만, 정부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권신장에 유리
- 특히, 인권을 소홀히 하는 대통령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독립성이 보장되는 정부밖의 기구로 인권위를 설치하여야 함
- 외양과 실제 모두 독립적이어야 함

4. 訪問成果

- 대통령님의 취임 이후 새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신장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확인
- 정부의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 설치 방향이 UN 등 국제인권기관의 기준에 부합됨을 확인

5. 向後計劃

- 방문결과를 참고하여 법무부안중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받는 부분 수정
- 국민회의와 시민단체를 상대로 방문결과 설명
- 장기수 석방과 더불어 한국의 인권신장노력에 대한 국제 사회에서의 홍보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원회 설치 신속 추진



정보공개청구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박래준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 [Redacted]
	주소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신사구 송곡동 [Redacted]		
	신분	<input type="checkbox"/> 일반개인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교수·교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보내용		병사 기재		
사용목적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 <input type="checkbox"/> 사업관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감시 <input type="checkbox"/> 소송관련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목재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99년 2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박래준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p>				
<p>※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수인의 명단을 첨부하고,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p>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p>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정보공개청구 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검사출신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박주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연합뉴스 1999년 2월 7일자)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씨가 귀국한 후 “유엔 전문가가 법무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거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무부안을 지지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박주선 씨가 법무부 인권법안에 유리한 증언을 의도적으로 도출할 목적으로 뉴욕에서 활동했다는지 혹은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국 후 왜곡되게 보고했다는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는 민주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국가의 중대사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관심을 집중시키며 그 향방을 지켜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위와 같은 소문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조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를 박주선 법무비서관의 행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후에 뒷말이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박주선씨가 미국으로 파견되었던 배경, 대통령께서 박주선 씨를 파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린 지시.
2. 박주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뉴욕에서 만난 유엔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들의 구체적 명단과 연락처.
3. 박주선 씨가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때,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의 여부. 현재 한국에서 3개의 시안, 즉 법무부안과 국민회의안, 민간단체안이 각각 나와 있으며, 서로 대립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
4. 박주선 씨가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간 자료는 어떤 것이었는지, 미국으로 가져가 전문가들에게 제시했던 자료 일체.
5. 박주선 씨가 미국에서 이들 전문가들에게 했던 구체적 질문내용과 그들의 답변 내용.
6. 2월 11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인권단체초청 연찬회 석상에서 박주선 씨는 Mary Robbison 씨와 면담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네바 방문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는데, 대한민국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면담 요청에 대해 3개월 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한 유엔직원의 구체적 이름과 직책, 이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Burdekin 씨와의 면담을 시도해 보았는지의 여부.
7.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매리 로빈슨(Mary Robbinson) 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특별보좌관 브라이언 버드킨(Brian Burdekin) 씨 등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유엔전문가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제네바를 방문하지 않고 뉴욕을 방문한 이유.
8. 박주선 씨가 귀국 후 김대중 대통령께 올린 뉴욕 방문 결과 보고서.

위 자료를 청구합니다.

1999년 2월 19일

청구인 대표 박래군

* 첨부

공동 청구인 명단

이름	소속	주민등록번호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남규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

(별지제6호서식)

우110-050/주소 :종로구 세종로 1번지/전화(770-0057)/전송(770-0274)/총무비서실 조태홍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총무 12430 - 199

수 신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박래군) 외 2인

접 수 일 자	99. 2. 22	접수번호	3
청구정보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법무비서관 방미활동		
공 개 내 용	별첨참조		
비공개(전부또는 일부)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거		
공 개 방 법	직접공개	<input type="checkbox"/> 열 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우송공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 개 일 시	99.3. .	공 개 장 소	총무비서실
수 수 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A+B-C)
2,000 원	원	1,000 원	1,000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99년 3월 8일

대통령비서실장
(기관의 장)



청구정보 및 부분 공개내용

- 1) 법무비서관이 미국으로 파견되었던 배경, 대통령께서 법무비서관을 파견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내린지시?
 - 인권위원회 설치 관련 방미계획서 공개(99. 1. 법무비서관실)
 - 대통령 지시를 별도 문서로 작성한 것은 없고, 대통령 구두지시를 토대로 위 방미계획서를 작성한 것임

- 2) 법무비서관이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뉴욕에서 만난 유엔전문가와 국제법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연락처?
 - 인권위원회 설립관련 국제인권기관 방문결과보고서 공개(99. 2. 법무비서관실)
 - 구체적인 연락처는 주 국제연합 한국대표부를 통해 연락한 관계로 비서실에서는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개 불가능(동법률 제2조제1항)

- 3) 법무비서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때 우리나라 상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여부? 3개의 시안 법무부, 국민회의, 민간단체안의 서로 대립 및 논란의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 개괄적으로 구두 설명하여 별도 작성된 문서가 없으므로 공개 불가능(동법률 제2조제1항)

- 4) 법무비서관이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간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으로 가져가 전문가들에게 제시했던 자료일체?
 - 법무비서관이 작성·제시한 문서가 없으므로 공개 불가능(동법률 제2조제1항)

- 5) 법무비서관이 미국에서 이들 전문가들에게 했던 구체적인 질문내용과 그들의 답변내용은?
 - 인권위원회 설립관련 국제인권기관 방문결과 보고서 공개

6) 2월 11일 국민회의 인권위원회 주최 인권단체초청 연찬회석상에서 법무비서관이 매리 로빈슨(Mary Robbison)씨와 면담하려면 3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네바 방문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는데, 법무비서관의 면담요청에 대해 3개월정도 걸린다는 답변을 한 유엔 직원의 구체적 이름과 직책, 이 문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버드킨(Burde Kin)씨와의 면담을 시도해 보았는지 여부?

- 별도로 작성된 문서가 없으므로 공개 불가능(동법률 제2조제1항)

7)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매리 로빈슨(Mary Robinson)씨, 유엔인권고등판무관특별보좌관 브라이언 버드킨(Burde Burde Kin)씨등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유엔전문가들이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제네바를 방문하지 않고 뉴욕을 방문한 이유는?

- 별도로 작성된 문서가 없으므로 공개 불가능(동법률 제2조제1항)

8) 법무비서관이 귀국후 김대중대통령께 올린 뉴욕방문결과 보고서?

- 인권위원회 설립관련 국제인권기관 방문결과 보고서 공개

※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제2조제1항)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